경남창원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리스 과업지시서

2026. 10.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리스 과업지시서

Ⅰ 개 요

❍ 사 업 명: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리스

❍ 사업내용: 자활근로 사업용 친환경 차량 임차(장기계속계약)

❍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 인 수 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급적 2026. 12. 31. 이내

❍ 총사업비: 금48,106,410원(부가세 포함)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총사업비는 전기차보조금 제외금액입니다.

Ⅱ 차량조건

차 종	PV5 카고 스탠다드 4DR
색 상	외부) 클리어 화이트 내부) 네이비
수 량	1대
옵 션	- 4DR - 롱레인지 - 컨비니언스 - 드라이브 와이즈 - 모니터링
추가용품	- 측후면, 전면 루마GG - 블랙박스 장착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48,106,410원 (※ 임차기간 36개월 / 월리스료: 약800,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탁송료, 제세공과), 부가가치세 포함
만기조건	- 만기시 반납 또는 잔가 인수 가능
기타조건	일반자동차 번호판 사용 (허, 하, 호 등 렌트 차량 번호판 불가)

Ⅲ 계약 세부조건

1. 일반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인도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204 주차장 내
연간 약정 주행거리	40,000km
보증금·선납금·개시대여료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2. 계약(임차)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진해지역자활센터가 행하는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임차(리스)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한다.
4.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뢰인”이라 함은 진해지역자활센터를 말하며,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의뢰인”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의뢰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뢰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월납입료는 차량 리스료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잔여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7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의뢰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량은 “계약의뢰인”이 제시한 리스차량 세부내역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뢰인”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법에 의한다.
②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3.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4. 비밀유지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은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6.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발주부서”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볍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